

하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발의자 : 하남시장(노인장애인복지과)

제출일 : 2022. 6.

1. 제안이유

- 하남시는 65세이상 노인 42,529명(13.15%)으로 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음.
- 노인 세대만이 아닌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살기좋은 환경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.

2. 주요내용

- 가.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(안 제1조)
- 나.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(안 제7조)
- 다.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16조, 제17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강환천)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노인복지법」 및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의거 우리시의 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서,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,
-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조례안 제24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인 「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는 2021년 3월 「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의 제정으로 폐지된 조례로, 인용 조례 제명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